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46 발의연월일: 2024. 11. 11.

발 의 자: 조은희 · 신성범 · 박정하

이성권 • 이인선 • 우재준

주진우 · 김용태 · 윤상현

서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득·재산 정도, 취업상태 등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청소년부모를 선정하여 그에 대해 생활·의료·주거 등 복지지원을 할 수 있음. 이에 더해 현행 법령에 따른 복지지원 이외에도 여성가족부는 2022년부터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을 예산 사업으로 실시해오고 있음.

또한 현재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정폭력 및 친족성폭력 피해자와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쉼터 입소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가 원인이 되어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를 연락의무 면제 사항으로 규정하고, 여성가족부가 예산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실시 근거를 현행법에 명확히 담아 그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 써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이 원활하고 지속적・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제32조의2 제1항 등).

법률 제 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2항 중 "생활지원"을 "아동양육비지원, 생활지원"으로, "물품"을 "금전, 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복지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또는 내용은 소득·재산 정도, 취업상태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 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를 각각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으로 하고,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이하 "복지지원"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지지원을 신청한 청소년부모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이 조에서 "금융정보"라 한다)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라 한다)
-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보 험정보"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 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부모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가 제18조의 3제3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선정기준에 적합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

용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청소년부모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의 방법·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청소년쉼터(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을 "청소년쉼터를"로,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를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청소년쉼터(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폭력 및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하는 경우에는 연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
지지원) ① (생 략)	지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2
<u>생활지원</u> , 의료지원, 주거지원,	아동양육비지원, 생활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u>물품</u>	<u>금전,</u>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	물품
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	③
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	
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후단 신설></u>	이 경우 복지지원 대상 및 지
	원 금액 또는 내용은 소득·재
	산 정도, 취업상태 및 「국민기
	초생활 보장법」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u>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u>
	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리하여
	<u>정할 수 있다.</u>
<u> <신 설></u>	제18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
	원(이하 "복지지원"이라 한다)

을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지지원을 신청한 청소년부모 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받아야한다.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융자산 및 금융 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조에서 "금융정보"라 한다)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라 한다)

-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이 조에서 "보험정보"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금융실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청소년부모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 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 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 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2조제 1호의 금융회사등, 「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 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금융기 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 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 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 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복지지원

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가 제 18조의3제3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선정기준에 적합한 상태 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 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 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 제3 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 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 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 게 청소년부모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 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 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

제18조의4(청소년부모에 대한 교 제18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교 육지원) (생 략)

업체험 및 취업지원) (생 략)

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 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

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 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 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 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⑦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의 방법·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육지원) (현행 제18조의4와 같 음)

제18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직 제18조의6(청소년부모에 대한 직 업체험 및 취업지원) (현행 제1 8조의5와 같음)

소년쉼터 계속 이용) <신 설>

① 청소년쉼터(가정 밖 청소년을 기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소년쉼터 계속 이용) ① 청소
년쉼터(가정 밖 청소년을 7일
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
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
쉼터에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
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
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폭력 및 친족에 의한 성폭
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
인이 되어 입소하는 경우에는
연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
<u>②</u> <u>청소년쉼터를</u>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
<u> 유가</u>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가정 밖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을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1.・2. (현행과 같음)
<u>③</u>
<u>제2항</u>
<u>.</u>